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스마트덱스연금보험(5년의무납입형)

## 2. 연금 지급형태

연금 지급형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보증금액부

## 3. 연금개시나이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12)세	45세 ~ 75세

## 4.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5.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전기납(Y세납)	월납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의 구분

####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 나. 보험료 납입 한도

#### (1) 기본보험료

월납보험료 30만원 이상

#### (2) 추가납입보험료

(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 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나) '(가)'에서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가)'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국고채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가)'의 한도를 적용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한도에서 제외된다.

#### 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까지는 기본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납입)까지의 기간을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의무납입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료 납입횟수(60회)를 “의무납입횟수”라 한다.]
- (2)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 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1회당 최소 5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납입한다.
- (3)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라.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4) '(2)'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회사에서 정한 총 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 라.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서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2)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8.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으로 한다.

### 나.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으로 한다.

## 9. 주가지수 연동에 관한 사항

### 가. 주가지수연동기간 및 주가지수평가기간

- (1)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은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시작일” 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일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주가지수연동기간시작일로 한다.
- (2) 이 보험의 주가지수평가기간은 보험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날(이하 “주가지수평가기간 시

작일”로 한다)부터 매 1년으로 하며, 회사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을 보험계약 청약 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1)’ 내지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또는 공시이율(이하 주가지수연동이율 및 공시이율을 “연동이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한다.
- (4) 계약자는 ‘(3)’에 의하여 연동이율의 적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변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적용한 연동이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어 ‘11.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매 주가지수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은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5)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가)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구입자금 규모가 작아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 (나)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계약자에게 적정 수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나. 연계주가지수

KOSPI200

## 다. 주가지수연동이율에 관한 사항

- (1)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중 연계주가지수의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합산하여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산출한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은 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주가지수연동이율}(\%) = \text{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times \text{참여율}(\%)$$

(주) 주가지수연동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사용한다.

#### (가)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매월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기준지수)와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만기지수)를 기준으로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계산한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은 최고수익률과 최저수익률을 한도로 한다.

$$\begin{aligned} & \text{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 &= \text{Max} \left[ \text{Min} \left\{ \frac{\text{만기지수} - \text{기준지수}}{\text{기준지수}} \times 100(\%), \text{최고수익률}(cap) \right\}, \text{최저수익률}(floor) \right] \end{aligned}$$

- (주)
- **지수기준일**: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의 전일 (다만,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 말일을 지수 기준일로 하며, 지수기준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로 한다)
  - **만기지수**: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
  - **기준지수**: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다만, 최초 기준지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한다)
  - **최고수익률(cap)**: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하는 수익률의 최고한도로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 **최저수익률(floor)**: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하는 수익률의 최저한도로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 (나) 참여율

- ①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중 실제 주가지수연동이율로 지급하는 비율로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 ② 회사는 1종 이상의 참여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매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경우 설정된 참여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2) 주가지수연동이자의 지급

##### (가)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 기준금액

- ①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 기준금액은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의 납입횟수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 기준금액(Notional)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 1]

② ‘①’의 기본보험료 납입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과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이 속한 달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 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납입횟수는 의무납입횟수를 최고 한도로 한다.

(나) 주가지수연동이자의 계산

①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 기준금액에 ‘(1)’에 의해 산출된 주가지수연동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연 1% 이자 해당액(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이라 한다)을 최저 보증지급하며, 매 주가지수 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이라 한다) 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된다.

② ‘①’의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 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부리 적립한 금액이며, 보험 계약일부터 다음 달 계약해당일까지는 공시이율, 그 이외의 기간에는 1%의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다) 주가지수연동이자의 적립

‘(나)’에 따라 지급된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3)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된 날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 1% 이자 해당액을 지급한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내역을 통지한다.

##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운용계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해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

#### (1) 공시이율의 적용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보험계약일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 (2) 공시이율의 산출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공시이율은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의 80%를 최저 한도로 하며, 10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공시이율(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text{공시이율} = \text{외부지표} \times 30\% + [I - \log(I \times 50+1)/100] \times 70\%$$

#### (가)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 = \frac{C1 + C2}{2}$$

(주) ■ C1 : 산출시점에서 국고채권(5년만기)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  
다만, 국고채권(5년만기)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5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한다.

- C2 : 산출시점에서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

다만,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은 공신력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2개사에서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 각각의 평균값으로 한다.

#### (나)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I)

$$\text{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I) = \frac{2 \times (I_s - E_s)}{S_6 + S_0 - (I_s - E_s)} \times \frac{12}{6}$$

- (주)
- $I_s$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_s$  :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S_6$  : 산출시점 직전 6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 $S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공시이율

#### (1) 공시이율의 적용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2) 공시이율의 산출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은 일반계정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가)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sub>12</sub>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 (4) ‘가’ 및 ‘나’에 의하여 운용되는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 및 ‘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6)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11.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15. 기타’ ‘다’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나.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전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을 이 계약과 동년 동월에 가입한 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이전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한다.

라.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 및 해당 수금비를 공제한다.

## 12.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7.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 및 ‘나’에 의하여 감액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마. ‘가’ 내지 ‘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다.

## 13. 계약자적립금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누적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다만, 1회 인출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야 한다.

### 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

(1)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

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인출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나)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라) 주가지수연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 15. 기타

### 가.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개시시에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나. 보험가입금액

월납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보험료납입기간, 10}

###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연체이자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마.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7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기본보험료	할인율
기본보험료 70만원 초과 ~ 100만원 미만 (다만, 9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기본보험료 70만원 초과금액의 1.5%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6,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26,000원 +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2.5%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	51,000원 +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금액의 3.0%

## 바.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60회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납입회차	할인율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7%

- (2) ‘마’에 의하여 고액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아.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차.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

- (1)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2) '(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자적립금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 \left[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4)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3)'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